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김윤덕 (국토교통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단계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권한이 위임된 기본·사업계획 승인, 사업 운영·관리 등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이후 단계의 소관부서가 달라 업무 연속성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업무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임 범위에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.

한편,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않는 제주도에서 도시철도망계획('26~'35)을 수립 중임을 고려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의 도시철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대도시권에 한정되어 있는 위임 업무의 지역범위에 대한 제한을 없애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5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권한(도시철도운송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”을 “권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9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계획의 승인 및 고시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 국토교통 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<u>권한(도시철도운송 사업 사업구간의 전부 또는 일 부가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대도시권 안에 있는 경우 에 한정한다)을 「대도시권 광 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 통위원회에 위임한다.</u> <u><신 설></u> 1. ~ 18. (생략) ② · ③ (생략)	제28조(권한의 위임) ① ----- ----- ----- <u>권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<u>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 른 도시철도망계획의 승인 및 고시</u> 2. ~ 19. (현행 제1호부터 제18 호까지와 같음)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	
연 락 처	(044) 201 - 4133